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교육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유치원 교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
- 나. 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3조의 2)
- 다.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기준 삭제(안 제24조)
- 라.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항목 삭제(안 제36조의2)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을 “(유치원 교원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유치원에는”을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은”으로, “학급마다”를 “학급 당”으로,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를 “이상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둘 수 있다.

제2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 제23조(유치원 교원 정원) ① ---                                                                                                                                                                                       |
| ① 법 제20조에 따라 <u>유치원에</u><br><u>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u><br><u>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u><br><u>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u><br><u>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u><br><u>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u><br><u>다.</u> | ----- <u>유치원에</u><br><u>두는 교원의 정원은</u> -----<br>----- <u>학급 당</u> --<br>----- <u>이상으로</u> -----. <u>다만,</u><br><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u><br><u>에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교</u><br><u>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둘 수 있</u><br><u>다.</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u>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u><br><u>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u><br><u>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u><br><u>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u><br><u>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u><br><u>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u><br><u>정한다.</u> | <삭    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u><br><u>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u><br><u>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u><br><u>항은 관할청이 정한다.</u>                                                                         | <삭    제>                                                                                                                                                                                                    |
|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 <삭    제>                                                                                                                                                                                                    |
|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                                                                                                                                                                |                                                                                                                                                                                                             |

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삭 제

<삭 제>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5. <u>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u>  | <u>&lt;삭제&gt;</u> |
| <u>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u> |                   |
| 6. <u>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u> | <u>&lt;삭제&gt;</u> |
| <u>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u>  |                   |
| <u>월 1일</u>                |                   |
| 7. ~ 9. (생략)               | 7. ~ 9.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
| 연 락 처        | (044) 203 - 7163 |